

『인권연구』 6(2): 437-449.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6(2): 437-449.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3.6.2.437>

[책]

국내 첫 인권조약 주해서 발간까지의 긴 장정

: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박영사, 2024)

정인섭*

이번 「국제인권규약 주해」 출간은 필자가 사반세기 동안 마음에 품어 왔던 작업의 결과물이다. 첫 실행의 착수로부터는 19년이 걸렸다. 이 책은 국제조약에 관해 일반 출판을 목적으로 준비된 국내 최초의 본격 주해서이다. 약 20년 전 필자가 작업을 처음 계획했을 때 최소한 비(非) 서구어로 쓰여진 가장 상세한 국제인권규약 주해서 발간을 내심의 목표로 삼았다.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본에는 이 책과 같이 1300 페이지가 넘는 주해서가 아직 없지 않은가 한다.

출발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을 맞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국내외에서 벌어졌다. 국내에서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1999년 2월 제주 인권학술회의로 이어졌고, 기념사업회는 후일 한국인권재단으로 발전되었다. 국제적으로 세계인권선언 주해서가 여러 종 발간되었다. 필자는 10년 후 60주년이 되면 한글로 된 세계인권선언 주해서가 발간될 수 있을까 상상해 보았다. 솔직히 회의적이었다. 하여간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글판 세계인권선언 주해서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인권조약 주해서 발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제인권규약 주해 편집위원장

조약 주해서 편찬은 일반 단행본과 다른 특별한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작업이다. 다수 필진으로 구성하면 참여자들은 연구실적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별다른 경제적 대가도 따르지 않는다. 국내 국제법학계의 실정상 쉽지 않은 작업이다. 주해서 계획은 한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동면하듯 웅크리고만 있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계기로 마음에 담기 시작한 주해서 작업의 실제 첫 발자국은 2005년 1학기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국제인권법 강의에서 출발했다. 마음속에서만 품던 계획을 끄집어내 보기로 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을 그 학기 강의 주제로 삼고, 강의를 주해서 발간을 위한 연습으로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주해서를 기획한다면 세계인권선언보다는 조약인 국제인권규약을 목표로 삼는 편이 국내 현실에 더 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해 이를 선택했다. 필자는 2000년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라는 책자를 집필한 바 있기 때문에, 인권규약 이행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한 편이었다. 수강생이 모두 17명이었는데, 개인당 1-2개 조문을 배당해 기말보고서를 조문별 주해 원고로 작성하자고 했다.

첫 두 달간 강의에서는 M. Nowak의 「CCPR Commentary」를 기본서로 삼아 조문 내용 파악에 주력했다.¹⁾ 이 책은 한 개인이 집필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풍부하고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93년 초판이 나온 이래 2019년 발간된 제3판에 이르기까지 지난 30년간 국제인권법 학계나 실무계에서 변함없는 바이블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수업에서는 매주 3개 조문씩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본 내용을 습득했다. 4월 말까지의 수업을 통해 실제조항에 해당하는 제27조까지 수강생 발표를 완료했다. 5월 중순에는 무주 리조트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그동안 Nowak 책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 다른

1) M.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N.P. Engel, 1993).

자료를 추가·보완한 원고를 발표하는 자체 세미나를 가졌다. 이후에는 3시간 수업으로 하루 소화할 수 있는 분량에 한계가 있어 격주로 토요일 하루 종일 수강생 전원이 다시 내용을 보완하는 발표회를 2번 더 가졌다. 수강생들로서는 각자 맡은 조문에 대해 모두 4차례 원고를 발표하고, 교수와 동료 학생들의 코멘트를 받은 셈이었다. 그 결과 기말보고서로 17개 조문에 대한 해설원고 초안이 제출되었고, 이 경험이 이번 「국제인권규약 주해」의 모태가 되었다.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다른 수업에 비해 고된 강행군을 한 셈이었지만, 결과물에서는 질적 차이가 컸다. 국제법 전공자와 비전공자, 유직자, 우리 말과 법률에 서툰 외국인 유학생 등 수강생 구성이 다양했기에 균질한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웠다. 논문을 작성하고 글 쓰는 능력에 있어서 개인별 편차도 컸다. 다만 첫 출발의 발판을 마련했으니, 몇 달 더 단련하면 이 중에서 남들에게 보일만한 글이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말보고서를 발표용 논문으로 발전시킬 희망자를 모집했다. 기말보고서의 질을 감안해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의사 타진을 했다. 1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2005년 7월 6일 학교 세미나실에서 전업학생 6명이 참여한 첫 모임을 가졌다. 여름방학 중 각자의 기말보고서를 발전시켜 당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가 발간하는 「공익과 인권」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글 전체의 구조, 각주다는 법, 글쓰기에서의 공통적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한편 직장 등 개인 사정상 방학 중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작업에 참여하려는 학생이 몇 더 있었다.

2005년 여름방학 동안 대략 격주로 3번의 검토모임을 가졌다. 매번 모임 며칠 전 각자의 초고를 제출하면, 참여자들은 다른 모든 원고를 읽고 집단토론을 진행했다. 남의 글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자신의 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3편이 「공익과 인권」 제2권 제2호

(2005.8)에 처음으로 게재되었다. 이후 2년 동안 유사한 과정을 매 학기 반복해 「공익과 인권」 제4권 제2호(2007.8)까지 모두 19개 조문에 대한 대학원생급 필진의 해설원고가 발표되었다. 「공익과 인권」은 제4권 제2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간되지 않아 국제인권규약 해설 시리즈는 종료되었다. 참여 필자 10명으로서는 이 해설원고자 자신들의 첫 정규 학술지 발표였다. 2005년 1학기 국제인권법 수강생 중 5명은 이번 「국제인권규약 주해」 필진으로 참여해 10개 조문에 대한 원고를 집필했으나,²⁾ 이 주해서와 인연의 세월이 필자만큼이나 길다.

규약 주해서 작업은 이후 잠시 수면 아래로 잠적했으나, 늘 마음 한구석 부채로 자리 잡고 있었다. 틈틈이 이 작업에 관심 있을 만한 대학원생을 개인적으로 접촉해 원고작성을 권했다. 2009년까지 5-6개 조문에 대한 원고가 추가로 완성되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조문에 대한 초고가 작성된 셈이었다. 2010년 그때까지 수집된 원고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았다. 상당수가 이미 한번 활자화되었던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규약 주해서로 묶어 세상에 내놓기에는 아직 여러모로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 여전히 상당한 보완이 필요했다.

마침 2010년 말 겨울방학에 공익인권법센터는 대학본부로부터 국제관련 사업용으로 약간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그중 일부를 국제인권규약 주해원고 정리용 인턴 활용에 사용하도록 허가받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입소를 기다리던 학부 졸업반 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턴을 모집해 4명을 선발했다. 겨울방학 3달간 이들에게 기존 원고를 분담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라고 요청했다. Human Rights Committee³⁾의 새로운 결정례, 관련 국내 법령의

2) 도경옥, 김선일, 김원희, 박영길, 홍진영.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다. Human Rights Committee를 새로운 정부 공식번역본에서는 인권위원회로 번역하였고, 주해서에서는 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구분하기 위해 규약 위원회 또는 자유권규약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변화, 새로운 국내 판례 등을 반영하고, 기존 내용상 오류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들 4명이 검토 후 수정원고를 만들어 오면 필자가 읽고 미비점을 지적하고 다시 재수정 원고를 작성해 오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겨울방학 동안 4명의 유능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주해서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그 다음 단계로서 내용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글을 정제할 작업은 편집자로서 필자가 오롯이 전담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능력과 시간의 한계를 절감했다. 가장 어려운 점은 국제법 전공자인 필자가 한국의 관련 국내실행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부분이었다. 단순한 내용도 많았지만, 관련 쟁점 중에는 국내 학계에서 논란이 적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이를 필자가 간단히 정리해 나름의 결론을 제시하기가 힘에 벅찼다. 이 해 겨울 개인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규약 원고 정리작업에 투여했지만, 종착역은 여전히 멀었고 과연 내 능력으로 이 작업을 완수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들었다.

그 후 수년간 때때로 지난 원고를 들추어 보았지만 개인 형편상이 작업을 본격화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기존 원고들은 필자와 수많은 협의 끝에 작성되었고, 여러 사람의 수정·보완이 추가되었지만 출발은 대학원생들의 작품이었다. 각 필자들은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대학원생 수준의 작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원고가 많았다. 이 글들을 모아 세상에 내놓으려면 부분적 보완 아닌 전반적인 재작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2015년 인권법학회가 창립되며 그 초대 회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일단 학회가 처음 자리 잡는데 도움을 줄 요량으로 2년 임기의 회장직을 수락했다. 인권법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자 이 분야에 관한 학술적 기여를 하나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느껴졌다. 국제인권규약 주해서 작업이 우선 머리에 떠올랐다. 이는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한 “장기미제사건”이었다. 포기하기는 사실 너무 아까웠다. 정년도 다가오므로 대학교수로서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던 끝에 이를 다시 끄집어내기로 했다.

2017년 1학기 대학원에서 국제인권법 강의를 하며 주해서 작업을 마무리 지우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개인시간 투여가 필요한가를 알아볼 겸 조문(제7조 고문금지) 하나를 선택해 다시 원고를 만들어 보았다. 기본 원고가 처음 작성되었을 때와 시간적 간격이 컸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았다. 국내 실행 부분 집필은 여전히 필자에게 벽찬 과제였다. 한 개 조문을 재작성한 소감은 적어도 2-3년은 이 일에 전념해야 주해서를 완성할 수 있으리라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필자로 하여금 앞으로 수년간 이 작업에만 집중하도록 주변 현실이 허락할 것 같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스스로의 삶을 구상함에 있어서 이 무렵부터 국제인권규약 주해서에 대한 미련은 포기함이 현명하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마음속 버킷 리스트에서 이를 지웠다. 이제 생각하면 2-3년 집중해서 주해서를 혼자 완성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은 터무니없었다. 실제 2020년 15명의 국내 최고급 연구자들이 달려들어 다시 주해서 작업을 시작해 출간을 완성하는데 3년 이상 걸렸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정년을 맞게 되니 그 전후로 졸업생들과의 식사모임이 몇 번 있었다. 그때마다 여전히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국제인권규약 주해서를 진행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 「공익과 인권」에 오래 전 발표된 글이나마 이후 국내에서 규약 개별조문에 대한 그 이상의 상세한 논문이 발표된 바 없었기 때문에 업무 관련자들에게는 여전히 참고가 되고 있으며, 때로 빠진 조문에 대한 더 이상의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느냐는 문의도 있다는 전언이었다. 과거 원고 작업에 참여했던 졸업생들은 나름 애착을 느끼는 듯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나 혼자서는 남은 일을 감당하기 벅차니 누가 자기 일처럼 여기고 동참할 지원자가 있으면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속으로 현재 국내 학계 실정상 그 누구는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2020년 봄 백범석 교수(경희대)와 원유민 교수(서울대)가 국제인권규약 주해작업을 추진하면 자신들도 함께 참여하겠으며, 이 일을 꼭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2005년 처음 작업 시작 이래 제일 많은 4개 조문을 담당했던 도경옥 박사(당시 통일연구원, 현 충남대)와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 시간 소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만 있지 실제 일이 시작되면 초심을 유지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들은 여름경에도 다시 같은 의사를 피력했다. 이 정도면 한 번 믿고 추진해 보기로 했다.

먼저 편집위원회를 구성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9월 23일 저녁 정인섭, 백범석, 도경옥, 원유민 4인은 줌을 통한 첫 편집회의를 개최했다. 필자가 2005년 이래 15년 간의 전반적 진척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주해서 전체 목차는 진작부터 구상한 바 있어 기본적인 동의를 받았다. 이어 조문별 집필진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편집위원도 1-2명 더 추가 영입하기로 했다. 이혜영 박사(당시 사법정책연구원, 현 서울대)가 동참을 약속했고, 추후 김원희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참여해 편집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집필진은 과거 주해 원고작성에 참여했던 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나, 현재의 직업상황이나 전공상 적합하지 않은 필진은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국제인권법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도 적지 않게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실적 등을 참작해 후보자를 인선했다. 이들에게는 필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해 집필 참여를 권유했는데,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 참여를 수락했다. 총 15명으로 집필진이 구성되었다. 필자와의 과거 작업에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던 필진이 8명, 이번에 새로 참여한 필진이 7명이었다.

2020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집필에 들어갔다. 편집위원회는 집필진에게 배포할 기본지침부터 작성했다. 주해서 전체의 예정 목차와 개별 원고의 공통된 골격을 제시하고 그 세부항목에 포함될 내용을 예시했다. 기본 약어표, 주요 용어의 번역어, 각주 표기법도 정리해 제공했다. 국제적으로 성가(成家)가 높은 3종의 규약 주석서는 모든 집필진에게 제공했다.⁴⁾ 2005년부터 작업한 기존 원고도 참고용으로 제

공하고, 이의 활용 정도는 각 필진에 맡기었다. 일단 처음 착수할 때는 일정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집필진에게 모든 원고에서 약 20% 내외 분량은 해당 조문에 관한 한국의 실행을 설명하는 항목으로 배정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조문의 실천을 담보할 국내 법률, 관련 판례와 실행, 문제점 지적, 이 점에 관한 국제사회의 평가 등을 정리하도록 했다. 국제인권규약 내용에 관한 국제적 실행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제기준이 과연 한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작업은 이 주해서의 강조점 중 하나였다. 국제인권규약 내용에 관한 국제적 실행은 외국어로 된 책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한글판 주해서는 한국의 실행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진정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점은 필자가 2005년 수업 시부터 고수하던 원칙이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주해서 작업이 그토록 오래 걸렸다. 주해서가 국제적 기준과 실행만을 소개할 목적이라면 외국의 저명한 책자 몇 종만 잘 정리하고 소개해도 유용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 이는 훨씬 짧은 시간에 완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의 경험상 이런 집단작업의 경우 각 참여자에게 임무 배정과 함께 원고 마감기일만 제시하고 방임하면 실패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남은 듯 해 참여를 수락했지만, 눈앞의 다른 일에 바빠 미루다 보면 마감에 임박해 급히 원고를 작성하는 필자가 적지 않다. 1년 기간을 주어도 결과는 한 두달 짜리 속성논문이 될 수 있다. 막판에 영영 못쓰겠다고 포기하는 이도 생겨 당황하게 되기도 한다. 마감일이 되어 원고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편집자는

4) ① Schabas, Nowak's CCPR Commentary: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3rd ed.(N.P. Engel Verlag, 2019) ② Taylor, A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mbridge UP, 2020) ③ Joseph & Casta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3rd ed.(Oxford UP, 2013).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책 전체의 일관성과 균질성 확보를 위한 필자와의 교감을 이룩하기 어렵다. 이것이 다수 필자가 참여한 상당수 책자가 제목은 그럴 듯 해도 외화내빈이 많은 이유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말까지 주로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2-3개 조문에 관한 초고를 검토하는 편집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하고, 1년 동안의 일정을 미리 정해 공지했다. 각 조문 집필자는 편집회의 5일 전까지 초고를 완성해 제출하고, 편집위원 전원과 토의를 가졌다. 지적할 때는 점잖게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의 나이나 경력은 잠시 무시한 채 모든 참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토의해 달라고 매번 부탁했다. 편집회의를 모든 집필진에게 개방해 먼저 만들어진 다른 필진의 원고를 참고하고, 토의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제작방향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편집회의를 거친 다음 필진은 1개월 후 수정원고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여간 집필자들이 이 일을 미루다 뒤늦게 단기 속성 작업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여러 신경을 썼다.

2021년 모두 11번의 편집회의를 통해 국제인권규약 총 27개 실제 조항의 주해 원고 1차 검토를 마쳤다. 편집회의 진행에는 줌 회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회의라 하면 당연히 모두 같이 모여서 진행하는 대면회의 밖에 몰랐다. 2020년 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사태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줌 회의를 통한 의견교환에 익숙해졌다. 지방은 물론 외국 체류 필진과의 회의도 손쉬워졌다. 회의시간은 주로 저녁 식사 후 야간을 이용했다. 회의가 10시나 11시에 끝나도 참석자들은 귀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줌 회의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주 편집회의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줌 회의 없이 주해서 작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다.

1차 검토 후 수정된 원고에 대해 3월부터 편집위원회 2차 검토를 진행했다. 두 번째 검토이므로 회의는 열지 않고 편집위원들이 개별

적으로 읽고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면 이를 모아 필진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전체 원고를 4등분해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한 번씩 검토를 진행하고, 의견을 받은 각 필진은 2-3주 내로 새 수정 원고를 제출하도록 했다. 여름까지 전체 원고작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각 원고마다 3인의 편집위원만 관여하기로 했다.

동시에 편집위원 분담으로 일반논평(*general comment*) 번역을 시작했다. Human Rights Committee의 일반논평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제31호까지 그리고 2020년 제36호까지 번역한 바 있으나, 아무래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편집위원 5명이 새로 추가된 제37호까지를 분담해 기존 번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 작업은 2022년 여름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편집회의의 역할은 전체 원고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조정작업에 집중되었다.

초고가 몇 번의 검토과정을 거치는 동안 2005년-2007년 「공익과 인권」에 발표되었던 원래 원고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졌다. 동일한 필자가 같은 조문을 계속 담당할 경우조차도 사실상 새로운 원고로 재탄생되었다. 건축으로 치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는 재개발이 된 셈이었다. 십수년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내용상 변화가 필요했음은 물론 필진의 연륜 축적이 가져온 결과였다.

주해서 작업 완료가 가시권으로 들어오자 이를 간행해줄 출판사 선정이 고민으로 다가왔다. 상업성 없을 이 책자에 선뜻 나설 출판사가 있을지 걱정되었다. 우선 필자의 책을 가장 많이 출간한 박영사와 접촉을 했다. 조성호 기획이사와의 상의하니 주해서 출간은 박영사로서도 관심 사업이라며 의외로 선선히 출판을 수락했다. 알고 보니 박영사는 근래 민법 주해, 형법 주해 등 여러 종류의 국내법 주해서를 간행 중이었다. 출판사 문제가 해결되니 필자로서는 한시름 놓았다.

당초 계획은 2022년 여름까지 모든 원고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경부터 편집·조판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때 변수가 하나 생겼다. 외교부 국제법률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선

택의정서」의 기존 정부 번역본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재번역을 추진 중이었다. 외교부의 이런 작업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마무리될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국제법률국 측으로부터 번역 개정과 관보 공고를 2022년 10월까지 마칠 계획이니, 규약 주해서 출간을 그 이후로 미루는 편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기존 번역을 기준으로 규약 주해서 원고를 여름에 완성해 연내 출간하면, 책이 나오자마자 정부 공식 번역이 변경되는 결과를 맞게 될 형편이었다. 주해서 원고에는 기존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 지적의 상당 부분은 개정 번역에 반영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정부 번역본이 개정되면 이러한 지적이 무의미하게 된다. 아무래도 정부 번역 개정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해서 추진은 잠시 중지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필진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지했다.

외교부의 번역 개정작업은 마무리가 예정보다 상당히 지체되었다. 최종적으로는 해를 넘긴 2023년 6월 9일 개정 번역이 관보에 공고되었다. 주해서 원고 속의 용어사용도 새 번역에 맞춰 변경해야 했다. 관보 공고와 동시에 집필진에게 새 번역과 신구 번역 대조 파일을 전달하고, 새 번역에 따른 원고 수정을 7월 20일까지 완료해 달라고 부탁했다. 어렵거나 복잡한 작업은 아니었기에 7월 하순까지 모든 수정 원고가 접수되었다. 편집위원들의 일반논평 번역 수정본도 모두 도착했다. 필자가 전체 원고를 수집해 형식을 재검토한 후 7월 24일 박영사에 작업 파일을 전달할 수 있었다.

2005년 봄 시작한 「국제인권규약 주해」 출간이라는 긴 장정이 19년 만인 2024년 초에 완료되게 되었다. 이 책자의 필진은 물론 그간 여정의 중간과정에 기여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이 책자는 국내 학계와 법조계, 정부 실무자는 물론 인권운동가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리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국내에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물론 여러 중요 인권조약에 대한 주해서가 연이어 출간되기를 기대한다.

[첨부]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목차

제1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란/ 정인섭

제2부 국제인권규약 실체조항

제1조(자결권)/ 임예준

제2조(당사국의 이행의무)/ 정인섭

제3조(남녀평등)/ 이해영

제4조(비상사태 시 이행정지)/ 원유민

제5조(권리남용 금지와 안전조항)/ 김원희

제6조(생명권)/ 도경욱

제7조(고문 등의 금지)/ 정인섭

제8조(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도경욱

제9조(신체의 자유)/ 원유민

제10조(피구금자의 권리)/ 홍진영

제11조(계약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구금금지)/ 도경욱

제12조(거주·이전의 자유)/ 김선일

제13조(외국인 추방에 대한 절차적 보장)/ 김선일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원유민

제15조(소급처벌금지)/ 김원희

제16조(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박영길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백범석

제18조(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홍관표

제19조(표현의 자유)/ 도경욱

제20조(전쟁선전 및 증오고취의 금지)/ 정인섭

제21조(집회의 자유)/ 장태영

제22조(결사의 자유)/ 이해영

제23조(가정과 혼인)/ 공수진

제24조(아동의 권리)/ 백상미

제25조(참정권)/ 백범석

제26조(평등권 및 차별금지)/ 이해영

제27조(소수집단의 권리)/ 이주영

제3부 국제인권규약 이행제도/ 백범석

제4부 자료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선택의정서
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다.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2. 일반논평(제1호-제37호)
3.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제1차-제5차)
4. 대한민국에 대한 개인통보사건 일람